--- 목 차 ---

의 안 번 호	건	명	페이지
2019-87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기	계획 변경안	
2019-88	거창군 공유재산(일반재산)	토지 교환 동의안	
2019-89	거창군 노상주차장 유료화 전환	<u>보</u> 에 따른 민간위탁 동	등의안
2019-90	거창천적생태과학관 민간	위탁 동의안	
2019-91	거창스포츠파크 내 골프연	년습장 민간위탁 동	들의안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안 번호 2019-87 제출일자 : 2019. 5. .

제출자:거창군수

동부권역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설사업

1. 제안이유

○ 농업인의 영농편의 제공 및 고가의 농기계 구입비 부담경감을 위해 동부권역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위 치: 거창군 가조면 장기리 1569번지

○ 대지면적 : 3.750.1 m² (토지소유자 : 윤**)

○ 건축규모: 지상 1층(농기계보관창고 1동 및 운영사무실 1동),

연면적 800 m²

○ 사업기간 : 2019. 1. ~ 2020. 12.

○ 사 업 비 : 1,900백만원(국 500, 도 150, 군 1,250)

- 부지매입비 : 300백만원

- 건 축 비: 800백만원

- 임대농기계 및 운영장비 : 800백만원

○ 주요기능 : 농기계 임대사업소 보관창고 및 운영사무실

나. 취득재산 세부내역

(단위:m², 천원)

- н	재산		재 ^	산 의	표 시		-12-1-1	취득	취득	재 산
구분	재산 종별	소	재	지	지목	면 적	기준가격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소유자
취득	토지	가조면	장기리	1569	납	3,750.1	73,126,950	2019	동부권역 농기계임대 사업소 신설	윤**

※기준가격: 공시지가 * 면적

다. 추진경과

○ 2018. 8. : 동부권역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설 추진 계획 수립

○ 2018. 8. :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 신설 계획 심의 의결

○ 2019. 4. : 동부권역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설 부지검토 보고

○ 2019. 5. : 동부권역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설 추진 주민설명회 개최

○ 2019. 5. : 공유재산심의회 승인

라. 향후계획

○ 토지매입 : 2019. 5. ~ 12.

○ 사업신청 : 2019. 7. ('20년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설)

○ 설계용역 : 2020. 1. ~ 4.

Q 착공 : 2020. 5. **Q** 준공 : 2020. 12.

마. 기대효과

○ 동부권역(가조, 가북) 농업인 영농편의 향상

○ 농번기 임대농기계 병목현상 해소 및 적기영농 실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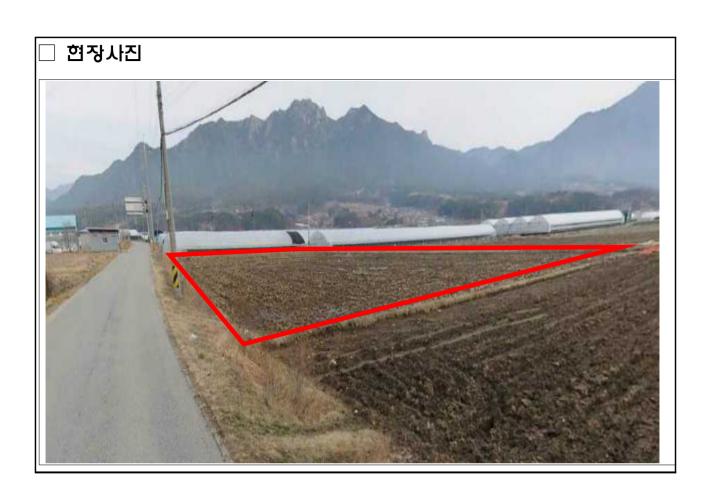
3. 관련법규 및 조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

4. 위치도 및 현황사진 : 따로 붙임

□ 지적도





관계법령(요약)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 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 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 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 한 같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 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 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
 -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 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 기준가격 명세
 계약방법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 2.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처분
-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무상양여
-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ㆍ처분
- 8.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
- 9.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ㆍ처분
-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 득·처분
-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 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 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 ⑤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전 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 ⑥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1건"이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같은 취득・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 2.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년도에 걸쳐 취득 ·처분하는 경우
- 3.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
- 4.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 5. 해당 재산에 인접(隣接)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 6. 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운 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 득 또는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⑦ 이 조에서 "기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 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 비로 한다.
 -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 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2. 건물

- 가. 단독주택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 나. 공동주택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건물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 액
-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군수는 법 제10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 (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재산관리관의 공유재산 취득·처분(안)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이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유림에 대하여는 공유림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혐의하여야 한다.
- ③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취득·처분하여야 할 재산에 대하여는 그 소관으로 할 재산관리관이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 재산관리관은 제3항에 따라 취득·처분하여야 할 재산이 확정되거나 변동이 있으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거창군 공유재산(일반재산) 토지 교환 동의안

의안 번호 2019-88 제출일자 : 2019. 5. .

제출자:거창군수

1. 제안이유

가. 김용마을 경로당이 협소하여 마을주민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음

나. 김용마을의 오랜 숙원사업인 경로당 신축을 위한 부지 확보를 위하여 공유재산과 교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산교환 내역

○ 신청인 소유의 재산 표시

종별	재산소재지	지목(종목)	구조	면적(m²)	비고
토지	거창읍 양평리 333-1	대지	_	83	
건물	u	_	조적조	45.91	

○ 공유재산의 표시

종별	재산소재지	지목(종 목)	구조	면적(m²)	비고
토지	거창읍 양평리 338-6	과수원	-	230	일반재산

나. 추진경과

○ 2018. 12. : 폐기물매립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주차장)후 잔여지로 존치

○ 2019. 2.: 잔여지 용도폐지 승인(2019년 제1회 공유재산 심의회)

○ 2019. 3.: 공유재산 교환 신청(김용마을회)

○ 2019. 4. : 공유재산심의회 재산 교환 승인

다. 향후계획

○ 2019. 6. : 감정평가 및 재산 교환

라. 기대효과

- O 마을회 소유의 부지 확보로 마을경로당 신축이 가능함
- 경로당 확장을 통한 노인 여가 생활과 복지 향휴 공간 확보로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 가능

3. 관련법규 및 조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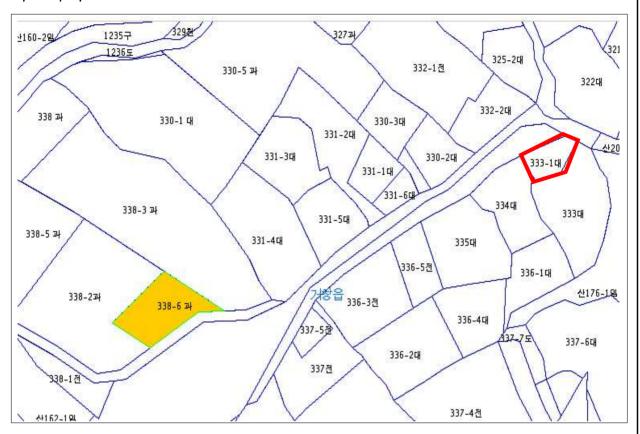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4조

4. 위치도 및 현황사진

가. 위치도



나. 지적도



다. 현장사진(군유 재산 - 토지)



다. 현장사진(마을회 재산 - 토지, 건물)



관계법령(요약)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9조(교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인 토지, 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을 국유재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또는 **사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재산으로 사용하거나 소규모 일반재 산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함으로써 재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경우
- 2.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재산의 가치와 효용도를 높이는 데 필요한 경우 로서 매각 등 다른 방법으로 해당 재산의 처분이 곤란한 경우
- 3.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재산으로 사용하거나 소규 모 일반재산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함으로써 재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요 하여 교환을 요청한 경우

4.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교환을 할 때 교환하는 일반재산의 종류·가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교환하는 경우 양쪽의 가격이 같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내야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4조(교환) ① 법 제39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교환할 때에는 국유재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 교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유사한 재산으로 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재산과 교환하여야 한다.

② 국유재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 교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교환하는 재산 중 한쪽의 가격이 다른 쪽 가격의 4분의 3 미만일 때에 는 교환을 해서는 아니 된다.

거창군 노상주차장 유료화 전환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019-89

제출일자 : 2019. 5. .

제 출 자 : 거창군수

1. 요구이유

노상주차장 유료화 전환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 업 명 : 거창군 노상주차장 유료화 운영

나. 위탁구간 : 북부사거리 ~ 중앙교사거리 구간 노상주차장(47면)

다. 위탁대상 사무

O 주차안내 및 지도

O 주차요금 징수

라. 기 운영현황

O 수탁기관 : (사)경남지체장애인협회 거창군지회

O 위탁기간: 2009. 3 ~ 2017. 2./ 1년 단위로 수의계약

O 위탁현황(최근 3년간)

연도	계약방법	주차면수 (면)	위탁료 (천원)	비고
2014	수의계약	92	5,956	○매년 예정가격 여건 변동율 적용
2015	수의계약	74	5,047	○산출식 : 군유 재산 대부료 상당액 적용
2016	수의계약	69	3,600	○수탁자 결정방법 : 수의계약

마. 운영계획

O 모집방법: 수의계약

O 위탁업체: (사)경남지체장애인협회 거창군지회

- 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 입찰 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공 시설물의 관리 경험이나 실적이 있는 법인과 비영리 법인

- 그 밖에 능력있는 법인 또는 개인
- O 위탁기간 : 위탁업체와 계약일로부터 1년간
- O 운영시간(연중무휴)

г 4월 ~ 10월 : 08:00 ~ 20:00

L 11월 ~ 3월 : 09:00 ~ 19:30

○ 위탁구간 : 북부사거리 ~ 중앙교사거리 47면(573 m²)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운영 장점

- 법인·단체에 위탁함으로써 노상주차장 관리에 편리한 서비스 제공 및 신속한 대처 등 효율적인 운영 가능

나. 관계법령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 O「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6조
- O「주차장법」제8조
- O「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 5

다. 향후일정

- 위탁업체 계약 체결 : 2019. 6월말
- O 행정예고 및 시설정비 : 2019. 7월말
- O 위탁 운영 : 2019. 8. 1. ~ 2020. 7. 31.

라. 소요예산 : 10,700천원

- 홍보물 제작 : 700천원
- O 주차구획선 도색 및 시설물 설치 : 10,000천원

노상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민간위탁 운영 계획

노상주차장 유료화 전환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 위탁운영 근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 O「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6조
- ○「주차장법」제8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 5

□ 위탁 개요

O 모집방법: 수의 계약

○ 위탁업체 : (사)경남지체장애인협회 거창군지회

○ 위탁기간 : 2019. 8. 1. ~ 2020. 7. 31. (계약부터 1년간)

O 운영시간(연중무휴)

r 4월 ~ 10월 : 08:00 ~ 20:00 L 11월 ~ 3월 : 09:00 ~ 19:30

○ 위탁구간 : 북부사거리 ~ 중앙교 사거리 47면



□ 그간의 추진 사항

- O 2018. 11. : 행정사무감사 "시가지내 노상 주차장 유료화 검토"
- O 2019. 2. ~ 3. : 공영주차장 유료화 설문 조사
 - 4개구간 노상·노외주차장(온라인, 오프라인, 현장조사)
- 2019. 3. : 진정민원(대동회전교차로 단속시간 유예 및 유료 주차 운영)
 - 단속시간 연장 불가 및 대동회전교차로 유료화 검토
- 2019. 4 : 공영주차장 유료화 설문조사 결과 보고
 - 북부사거리 ~ 중앙교 구간 유료화 우선 추진
- 2019. 5 : 대동회전교차로 노상주차장 설치 의견 조회
 - 거창경찰서 : 회전교차로 설계 지침에 의거 노상주차장 설치 불가
 - 거창소방서 : 인명 구조 및 화재진압 활동 문제 발생

□ 그간의 운영현황

○ 위탁기관: (사)경남지체장애인협회 거창군지회

○ 위탁기간 : 2009년. 3월 ~ 2017년. 2월(1년 단위 수의 계약)

○ 위탁구간 : 북부사거리~중앙교 사거리

O 위탁현황(최근 3년간)

연도	계약방법	주차면수 (면)	위탁료 (천원)	비고
2014	수의계약	92	5,956	○매년 예정가격 여건 변동율 적용
2015	수의계약	74	5,047	○산출식 : 군유 재산 대부료 상당액 적용
2016	수의계약	69	3,600	○수탁자 결정방법 : 수의계약

- 무료화 사유(2017.3 ~ 현재)
 - 주차요금 징수에 대한 주차관리요원과 잦은 마찰
 - 무료운영 희망주민들의 민원 지속 제기
 - 대동회전교차로 신설 등 도로 여건 변화

□ 운영방법

구분	방 법	세부내용	비고		
운 영 방법	위탁운영	 대상업체			
운영 구간	47면	• 북부사거리 ~ 중앙교 사거리			
운영 시기	계약일로 부터 1년	• 2019. 8. 1 ~ 2020. 7. 31			
운영 시간	연중무휴	 연중무휴 4월 ~ 10월 : 08:00 ~ 20:00 11월 ~ 3월 : 09:00 ~ 19:30 			
1 , _	거창군 주차 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	지간 1구획 최초 최초 30분 회수권제 전기주차권(웰) 30분까지 초과 15분당 1월 주간제 야간제 1급지 500 250 5,000 50,000 35,000 2급지 300 150 3,000 30,000 21,000 주) 1. 급지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급지 : 노상주차장 ○ 2급지 : 노외주차장 2. 주차시간이 30분 미만일 때에는 1구획 최초 30분까지 한다. 3. 적용되는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별표 1에 의하되 이륜 자동차는 제외한다.			

□ 위탁업체 선정방법

○ 운영방법 : 민간 관리위탁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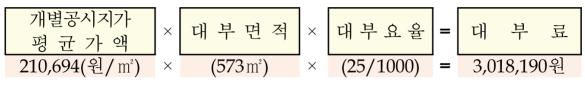
O 위탁자 선정 방법 : 수의계약

- 근거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 주차장법

제8조,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

- 예정가격 : 3,018,190원

※ 산출식



(공시일: 2018.1.1.적용)

주차구획선 구 분	개별공시지가 평균가액(A)	주차대수 (B)	1면당 주차면적 (C)	대부요율 (D)	합계 (A×B×C×D)
계		47			3,018,190
 일 반	210,694	45	2m×6m	0.025	2,844,369
장애인	210,694	2	3.3m×5m	0.025	173,822

□ 향후계획

O 위탁업체 계약 체결 : 2019. 6월말

O 행정예고 및 시설정비 : 2019. 7월말

O 위탁 운영: 2019. 8. 1. ~ 2020. 7. 31.

□ 기대효과

- O 장기주차방지, 중심상가 방문객 증가, 지역상원 활성화 유도
- O 자동차 이용을 자제시키고, 주차면 회전율 상승을 통한 주차난 해소
- O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노상주차장 확보의 선순환 형성
- O 도심주차환경 불편해소와 인근상가 이용 고객 증가

관계법령(요약)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행정과)

(제정) 1999.07.15 조례 제1515호 (일부개정) 2013.06.12 조례 제2138호 (일부개정) 2014.05.28 조례 제2192호

제 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개정 2013.6.12)
-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3.6.12)
-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 ·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6.12)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경제교통과)

제정) 1988.09.01 조례 제1001호 (일부개정) 1988.12.17 조례 제1018호 (일부개정) 1992.02.13 조례 제1259호 (일부개정) 1997.01.13 조례 제1431호 (일부개정) 1998.02.11 조례 제1467호 (일부개정) 1999.01.15 조례 제1499호 (일부개정) 1999.07.15 조례 제1522호 (일부개정) 2000.02.16 조례 제1555호 (일부개정) 2000.11.15 조례 제1598호 (일부개정) 2003.04.08 조례 제1670호 (일부개정) 2007.07.23 조례 제1844호 (일부개정) 2008.01.14 조례 제1878호 (일부개정) 2008.07.11 조례 제1893호 (일부개정) 2010.05.06 조례 제1975호 (일부개정) 2014.10.01 조례 제2215호 (일부개정) 2016.12.28 조례 제2349호 (일부개정) 2017.05.10 조례 제2372호 (일부개정) 2019.04.03 조례 제2501호 타조례개정(거창군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제 6조 (공영주차장의 수탁자 자격) (2016.12.28)

- ①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군이 설립한 공공 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경쟁 입찰 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공시설물의 관리 경험이나 실적있는 법인과 비영리법인(개정 1998. 2.11 조례 제1467호 2016.12.28)
- 3. 그 밖에 능력있는 법인 또는 개인

주차장법

[시행 2019. 1. 19] [법률 제16005호, 2018. 12. 1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도시광역교통과) 044-201-3811, 3814

- 제8조(노상주차장의 관리) ① 노상주차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차장을 설치한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하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그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라 한다)가 관리하다.
 - ②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의 자격과 그 밖에 노상주차장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③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와 그 관리를 직접 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 3. 2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약칭: 공유재산법)

[시행 2018. 10. 16] [법률 제15794호, 2018. 10. 16, 일부개정]

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 02-2100-3587

-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8. 12. 2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약칭: 공유재산법 시행령)

[시행 2019. 1. 1] [대통령령 제29324호, 2018. 12. 4, 일부개정]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한다. <개정 2017. 7. 26.>

-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 2.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 위를 정한 경우
- 3.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탁 받으려는 자의 관리위탁 수행 능력, 사업수행계획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5. 7. 20.]

거창천적생태과학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019-90

제출연월일	2019. 5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 거창천적생태과학관의 위탁기간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통해 천적생태과학관의 운영을 전문화하고 천적곤충 교육 및 지역 과학 문화 확충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전문성을 갖춘 법인 으로 하여금 위탁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현 황

O 시 설 명: 거창천적생태과학관

○ 위 치 :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372-60, 정장공원 부지 내

O 규 모: 2,833 m²

- 천적생태과학관 : 1,040m²(지하 1층, 지상 3층)

- 천적생산 온실 : 비닐온실 6동 1,530㎡

- 곤충체험 온실 : 유리온실 1동 263m²

나. 위탁사무

○ 시설운영: 과학관내의 시설물, 곤충체험사육온실 및 주변 조경시설물 관리

○ 전시운영 : 천적교육, 전시·홍보, 전시물의 기획, 유지보수 등

○ 천적생산 : 해충방제용 천적곤충(4종) 생산 및 농가 공급

다. 그간의 추진사항

○ 2011. 10월 : 거창천적생태과학관 준공 및 개관

O 2012. 1월 : 전문과학관 등록(경남 제4호)

○ 2013. 9월 : 천적곤충(4종) 생산·공급 실시

○ 2014. 9월 : 16개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 운영

○ 2016. 6월 : 최우수과학관상 수상(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

○ 2019. 2월 : 천적생태과학관 전시개선사업(리모델링) 준공

라. 운영계획

- O 위탁자 공모
 - 위탁기간 : 2020. 1. ~ 2012. 12.(3년간)
- O 위탁범위
 - 천적생태과학관 시설물 및 전시시설 유지 · 관리
 - 천적교육 및 전시·홍보, 천적곤충 생산 및 농가공급
 - 천적곤충표본제작 및 천적연구
 - 곤충체험·사육온실 및 주변 조경시설물 관리
 - 기타 천적생태과학관 관리 필요에 따라 지시하는 사항

마. 소요예산

- 연간 185,629천원 정도(공공운영비 및 시설비 미포함)
 - * 거창천적생태과학관 민간위탁운영 성과평가 및 위탁비용 산정용역 결과에 따라 위탁운영비 변동가능성 있음

3. 참고사항

가. 향후계획

○ 2019. 6월 : 민간위탁운영 군의회 동의

○ 2019. 7월 : 입찰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 2019. 9월 : 적격자 선정(민간위탁심의위원회)

○ 2019. 10월 : 협상 및 협약 체결

○ 2019. 11월 : 인계·인수 및 고시

나. 관련법규

- O 「과학기술기본법」 제4조
- O 「과학관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
- 「과학관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 O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13조
- O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제5조
- 「거창천적생태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12조
- 다. 위탁운영계획 : 따로 붙임

거창천적생태과학관 민간위탁운영 계획

거창천적생태과학관 민간위탁운영 기간이 만료(2019. 12. 31.)됨에 따라 입찰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여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위탁운영 하고자 함

Ⅰ. 법적근거

- O 「과학기술기본법」 제4조
- 「과학관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
- 「과학관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13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제5조
- 「거창천적생태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12조

Ⅱ. 시설개요

□ 시설현황

- 위 치 : 거창군·읍 거함대로 3372-60, 정장공원 부지 내
- O 규 모: 2,833 m²
 - 천적과학관 : 1,040 m² (지하1층, 지상3층)
 - 천적생산 온실 : 비닐온실 6동 1,530 m²
 - 곤충체험 온실 : 유리온실 1동 263 m²

□ 운영현황

- O 위탁기간
 - 1차 : 2011. 10. 25. ~ 2013. 11. 30.(2년간)
 - 2차 : 2013. 12. 1. ~ 2016. 12. 31.(3년간)
 - 3차 : 2017. 1. 1. ~ 2019. 12. 31.(3년간)
- 수 탁 자 : (사)천적이용정보교류센터(대표이사 구덕서)
- O 인력현황(4명)

분야	운영 총괄	회계·시설관리	교육·체험	천적생산
인원	1명	1명	1명	1명
직무	과학관 운영 및 천적생산 총괄	회계 업무 시설 관리	안내 및 해설	천적생산 및 공급

Ⅲ. 위탁추진 계획

- □ 위탁선정 :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O 제안서 평가: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제안서 평가위원회)
 - O 위 탁 기 간 : 2020. 1. 1. ~ 2022. 12. 31.(3년간)
- O 수탁자의 관리 능력 및 운영성과 피드백에 따른 계약 연장(5년 이내)

□ 위탁범위

- 시설운영 : 과학관내의 관련 시설물의 운영 및 콘텐츠 유지관리
- 전시운영 : 천적 콘텐츠 전시물의 기획 및 전시, 유지보수
- 천적생산 : 해충방제용 천적곤충(4종) 생산 및 농가 공급
- 곤충 종 사육 및 유지 : 전시용, 교육용 살아있는 곤충의 상시유지

□ 선정기준

- O 곤충생태관의 운영을 위한 전문화 정도 및 수요자의 교육 요구에 대응 능력
- 전문성을 가미한 효율성 및 투자 기대의 효과성 제고
- 특화된 고품질 전시 도입 및 운영과 관리품질의 향상 도모 능력
- O 천적곤충 생산 및 공급능력

Ⅳ. 양우계왹

- O 2019. 6월 : 민간위탁운영 군의회 동의
- O 2019. 7월 : 입찰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 O 2019. 9월: 적격자 선정(민간위탁심의위원회)
- O 2019. 10월 : 협상 및 협약 체결
- O 2019. 11월 : 인계·인수 및 고시

∨. 소요예산(안): 위탁비용 산정 용역 시영증(2019. 7. 완료)

구 분	비목	금액(천원)	산출내역(기초)
총계		185,629	
	급여1	49,800	4,150천원×12월=49,800천원
1. 인건비	급여2	34,200	2,850천원×12월=34,200천원
	급여3	26,400	2,200천원×12월=26,400천원
소계		110,400	
	식대(중식)	4,682	(130×3명)×12월=4,680천원
	국민연금	6,732	(187×3명)×12월=6,732천원
	건강보험료	4,824	(134×3명)×12월=4,824천원
2. 복리후생비	장기요양보험	396	(11×3명)×12월=396천원
	산재보험	900	(25×3명)×12월=900천원
	고용보험	936	(26×3명)×12월=936천원
	퇴직연금	9,096	(346+238+174)×12개월=9,096천원
소계		27,566	
	세무회계비	2,000	
	통신료	840	70천원×12월
	한국과학관협회	300	연1회
	한국소방안전협회비	48	연1회
	영조물배상공제비	1,600	연1회
	사무용 소모품비	1,000	
3. 일반관리비	관리운영비	6,000	전시관리 등
	인쇄비	500	
	출장비	500	
	교육비	500	
	소규모 수선비	1,000	
	특별전시 등	500	축제 및 행사
	예비비	1,000	
소계	_	15,788	
4. 재료비	재료구입비	15,000	천적생산 및 체험재료비 등
소계		15,000	
5.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16,875	총금액×0.1
소계		16,875	

※ 공공운영비 및 시설비 미포함

- 2019년 공공운영비 및 시설비 : 52,288천원

VI. 기대효과

- O 천적생태과학관 운영의 전문화 및 수용자의 요구에 신속 대응 가능
- 고품질 전시 및 프로그램 서비스 체계 구축 가능
- 지방과학문화시설 확충 및 천적교육 및 체험관광시설로 운영 가능

관계법령(요약)

□ 「과학기술기본법」

[시행 2018. 7. 18] [법률 제15556호, 2018. 4. 17, 일부개정]

- 제4조(국가 등의 책무와 과학기술인의 윤리) ① 국가는 과학기술혁신과 이를 통한 경제·사회 발전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과학기술진흥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③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 등은 과학기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28.>
 - ④ 과학기술인은 자율을 바탕으로 과학기술 활동을 수행하되 과학기술이 미치는 사회적·윤리적 영향을 고려하여 진실성 있게 수행하여야 하며, 경제와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과학기술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점을 인식하고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여 이 법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고 과학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전문개정 2010. 2. 4.]
- 제5조(과학기술정책의 중시와 개방화 촉진) ① 정부는 과학기술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통하여 과학기술이 국가의 경제적·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전략을 달성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창의적 연구개발과 개방형 과학기술혁신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2014. 5. 28.>
 - ② 정부는 정책형성 및 정책집행의 과학화와 전자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③ 정부는 과학기술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학기술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민간 전문가나 관련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게 하고 일반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 2. 4.]
- □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약칭: 과학관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17조(경비의 보조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7조에 따라 사립과학관 설

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그 설립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등록과학관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각각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국영 수송기관에 의한 과학기술자료의 수송에 관하여 운임이나 그밖의 요금을 할인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 ③ 모든 수송기관은 과학기술자료를 수송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최선의 안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 6. 7.]
- □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과학관법 시행 령)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0호, 2017. 7. 26, 타법개정]

- 제4조(과학관의 사업) 법 제5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1. 야외관찰학습지도
 - 2. 전시기법의 연구 · 개발
 - 3. 특별전시회의 개최
 - 4. 표본 제작의 실습지도
 - 5. 산업현장 실습지도
 - 6. 과학 공작 및 모형의 조립지도
 - 7. 과학경연대회의 개최
 - 8. 체험·탐구·연구 프로그램 등의 개설·운영 [전문개정 2013. 4. 22.]
- 제6조(전문직원의 자격)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과학관의 전문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 1.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해당 과학기술 자료 관련 직렬의 연구직공무원이거나 연구직공무원이었던 사람
 - 2.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해당 과학기술자료 관련 직렬의 연구직공무원이거나 연구직공무원이었던 사람
 -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해당 과학관이 취급하는 과학기술자료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 되는 사람
 -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연구기관·과학관 또는 박물관 등에서 과 학기술자료에 관련되는 전문적 사항을 담당한 경력(이하 "과학관등 근무경력"

- 이라 한다)이 1년 이상인 사람
- 5.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해당 과학관이 취급하는 과학기술자료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과학관등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6.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과학관등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7.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과학관등 근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람 외의 사람으로서 과학관등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전문개정 2013. 4. 22.]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곤충산업법) [시행 2019. 1. 15] [법률 제16227호, 2019. 1. 15, 일부개정]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 다.
-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곤충산업 사업수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곤충산업을 육성·지원하고 그 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8. 11.>
 - 1.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보급 및 정보수집
 - 2. 곤충과 관련된 교육ㆍ체험사업의 실시
 - 3. 곤충산업 관련 연구 및 교육 지원시설의 설치 · 운영
 - 4. 곤충산업 관련 교육 · 컨설팅 등 경영개선지원 사업의 실시
 -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
 - 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③ 지방자치단체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 8. 11.>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 2014. 5. 28.] [경상남도거창군조례 제2192호, 2014. 5. 28., 일부개정]

- 제1조(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04조에 따라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군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 개정 2013.6.12)
-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 란 각종 법률에 규정된 군수의 사무중 일부를 군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2. "수탁기관"이란 군수의 사무를 위탁받은 군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개정 2013.6.12)
 -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3.6.12)
 -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도 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및 후단신설 2013.6.12)
 -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

원할 수 있다.(개정 2013.6.12)

-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 ②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심사기준 및 심사항목별 배점기준 등을 명시하여 공고한다.(전문개정2013.6.12)
 - ③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 하도록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제1항의 선정기준에 따른 적격 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개정 2013.6.12)
- 제6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 수탁기관 선정,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시 적정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4분의 3이상이 되어야 한다.
 - 1. 군 소속 공무원(개정2014.5.28)
 - 2. 대학교수, 변호사 등 민간위탁 대상사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2014.5.28)
 - ④ 위원회는 민간위탁 사무의 성격에 따라 소관부서에서 구성하고, 수탁기관 선정 및 평가 등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 ⑤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민간위탁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1. 14 개정 2013.6.12)
-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 1. 위원이 심의대상기관(법인·단체나 기관인 경우 대표자)과 친족관계인 경우
 - 2. 위원이 심의대상기관에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

- 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기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 4. 그 밖에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호이동 2014.5.28)
- ② 심의대상기관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3.6.12)
- 제8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 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6.12)
- 제9조(협약체결 등)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 ② 협약서에는 수탁기관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및 협약내용 위반 시 의무이행 등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군수는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협약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민간위탁 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6.12)
- 제10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②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야 하며,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의 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징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수탁기관은 위탁시설, 장비, 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집행하여야 하며, 위탁 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업에 대한 주요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시설을 증·개축 또는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후단삭제 2014.5.28)

- ⑤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과정,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무편람을 작성한다.(전문개정 2013.6.12)
- 제11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 1. 수탁기관이 제10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 3. 수탁기관이 제12조의 지도·감독 결과 위탁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할 경우 수탁기관에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전문개정 2013.6.12)
- 제12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할 때에는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에 대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수 있다.
 - ②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내용에 대하여 매년 한 차례 이상 업무성과를 평가하고, 감사를 하여야 한다.
 - 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의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할 경우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전문개정 2013.6.12)

제13조 (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거창천적생태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 2011. 7. 6.] [경상남도거창군조례 제2037호, 2011. 7. 6.,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적생태에 대한 체험 및 학습의 기회와 다양한 정보제 공을 통하여 자연생태계 보호의식을 고취하고, 천적을 이용한 친환경농법을 실천하기 위하여 설립한 거창천적생태과학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거창천적생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

다)으로 하고, 그 소재지는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819-10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업무 및 기능) 과학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기능을 수행한다.

- 1. 천적생태체험을 통한 자연생태계 보호의식 고취
- 2. 천적에 관한 자료의 발굴 · 수집 · 보존 · 관리 및 전시
- 3. 천적에 관한 전문적 · 학술적인 조사 · 연구
- 4. 천적을 이용한 체험·탐구·교육프로그램 등의 개설·운영
- 5. 그 밖에 과학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과학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 하여 그 전시물 및 시설물을 일반인에게 관람 및 이용하게 한다.
 - 1. 매주 월요일
 - 2. 매년 1월 1일, 설연휴, 추석연휴
 - 3. 그 밖에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 ② 군수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하여 휴관하려는 경우에는 휴관 내용을 7일 전에 과학관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5조(관람시간) 과학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다만, 그 운영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관람료 및 관람권) ① 과학관을 관람하려는 자(이하 "관람자"라 한다)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이미 납부한 관람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관람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관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관람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 ③ 관람료를 납부한 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람권을 발급한다.
 - ④ 당일 징수한 관람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일일 결산하여야 한다.

제7조(관람료의·면제) ·

- ①·군수는·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1. 국빈, 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원
-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 3. 6세 이하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의 노인
- 4. 어린이 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장애인(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급의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 공자(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8. 표본기증 등 과학관 발전에 기여한 자
- 9. 과학관에서 추진하는 행사 및 교육에 참여하는 자
- 10. 그 밖에 군수가 과학관의 운영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일반관람자에게도 무료관람 또는 특별할인 관람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입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과학관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 1. 음주 상태로 공중이나 전시물 및 시설물에 유해한 행위를 할 염려가 있는 자 2.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 3. 그 밖에 전시물 및 시설물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9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과학관의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1. 흡연·음주·취사 또는 쓰레기투기 행위
 - 2. 고성방가, 소란 등 다른 관람자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 3. 관리자의 허가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 4. 허가되지 않은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 5. 각종 전시물 및 시설물을 손상시키는 행위
 - 6. 그 밖에 관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 ② 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관람을 거부하거나 퇴관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0조(관람자의 책임) 관람자가 고의나 부주의 등 그의 귀책사유로 과학관의 전시물 및 시설물을 손상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람자가 원상복구하거 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 제11조(판매 및 편의시설의 설치·운영) 군수는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과학관의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학관부지 안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 1. 매점 등 편익시설
- 2. 전시품 · 기념품 판매점
- 3. 친환경 우수 농·특산물 판매점
-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12조(운영위탁) ① 군수는 과학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이하 "운영위탁"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확보,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자를 수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 ③ 군수는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자와 운영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수탁내용, 위·수탁기간, 협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④ 과학관의 운영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운영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수탁자 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갱신할 수 있다.
 - ⑤ 군수는 과학관을 운영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운영위탁 업무 수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① 관람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과학관의 관리·운영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를 준용하고, 과학관의 운영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는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거창스포츠파크 내 골프연습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 2019-91

제출일자: 2019. 5. . 제 출 자: 거 창 군 수

1. 요구이유

거창 스포츠파크 내 골프연습장 의 민간위탁계약이 2019년 04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관계법령에 근거한 위·수탁계약 절차 이행코자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거창군 공유재산 및물품 관리조례』 제17조에 따라 전문지식이 있고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경기단체나 체육단체 또는 개인에게 골프연습장 및 테니스장을 위탁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대상사무 : 거창스포츠파크 내 골프연습장 관리운영을 위한 민간위탁나. 시설현황

O 골프연습장

부지면적	건축물 규모				타석수	비거
	층수	건축면적	연면적	구조	叶 省十	리
3,917 m²	지상2층	258.0 m²	300.2 m²	철근콘크리트구조	10타석	100 m





다. 위탁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라. 수탁자격 : 경기단체나 체육단체 또는 개인

마.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선정위원회에서 심의·결정

바. 예산지원 : 없음(골프연습장 및 테니스장 사용료로 운영)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운영의 필요성

골프연습장 관리운영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고 사업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기단체나 체육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군민여가생활의 개선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

나. 향후계획

O 수탁기관의 선정(공개모집): 2019년 06월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6~9명) : 2019년 07월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 및 결정 : 2019년 07월

O 위탁계약 체결 : 2019년 07월

O 위탁운영 : 2019년 08월

다. 위탁운영 선정계획 : 따로 붙임

라.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O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O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O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23조(관리위탁)

거창스포츠파크 내 골프연습장민간 위탁 계획

□ 배 경

○ 거창스포츠파크 내 골프연습장의 민간위탁계약이 2019년 04월30일로 계약 종료됨에 따라 관계법령에 근거한 위·수탁계약 절차이행

□ 위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O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O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O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23조(체육시설 위탁·위임)

□ 위탁대상

- O 거창스포츠파크 골프연습장
 - 골프연습장 운영
 - 골프연습장 건물 및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 위탁현황

- O 골프연습장
 - 시설명: 거창스포츠파크내 골프연습장
 - 위 치: 거창군 거창읍 심소정길 39-36번지 일원
 - 시설규모

	ㅂ키머저	건축물 규모				타석수	מן בן בן
	부지면적	층수	건축면적	연면적	구조	다식구	비거리
	3,917 m²	지상2층	258.0 m ²	300.2 m²	철근콘크리트 구조	10타석	100 m

□ 추진계획

- O 위탁기간: 5년 이내 (1회 재 계약가능)
- O 위탁자 선정방침
 - 수탁기관의 공개모집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사결과 부적격 시 재공고
- O 수탁기관 모집 : 공개모집
 - 공 고 : 거창군 홈페이지 및 도내 일간지
- O 수탁자격 : 경기단체나 체육단체 또는 개인
- O 추진일정
 - 의회동의 : 2019년 06월
 - 수탁자 모집공고 : 2019년 06월
 - 수탁자 선정 심의 위원회 구성 : 2019년 07월
 - 심의위원회 개최 및 수탁자 선정 : 2019년 07월
 - 위·수탁 계약체결 : 2019년 07월
 - 협약서 공증절차이행 : 2019년 07월
 - 시설 인계·인수 및 운영 : 2019년 08월

관계법령 발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 2018.10.06.] [법률 제15794호, 2018. 10. 16., 일부개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 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 이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군수가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비용 산정 등에 대하여는 법 제94조의2에 의한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른다.

- 1. 재산의 표시, 사용·수익허가 범위 및 위탁내용
- 2.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성명 및 주소
- 3. 관리위탁 기간
- 4. 위탁료, 사용료 등 관리위탁에 따른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 5. 관리수탁자의 권리 및 의무와 업무 범위, 계약내용 위반 시의 의무이행 등 (항전부개정 2014.10.01)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다시 대여하여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2014.10.01)
- ③ 관리수탁자가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 관리수탁자는 위탁계약 범위에서 전대 받은 자에게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의 사용료는 위탁계약 범위에서 관리수탁자가 영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항전부개정 2014.10.01 2015.12.10.)
- ④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드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2014.10.01. 2015.12.10.)
- ⑤ 관리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법 제27조제4항 및 영 제21조와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2014.10.01)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군이 직접 시행한다.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개정 2013.6.12)
-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3.6.12)
-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및 후단신설 2013.6.12)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6.12)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 제23조(체육시설 위탁·위임)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경기단체나 체육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체육시설 소재지 읍·면장에게 제3조부터 제13조까지, 제15조·제16조에 따른 그 소재지 체육시설의 운영· 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를 위임한다.(조전부개정 2018.10.31.)